

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

시설물 대여에 관한 규정

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(이하 「당 센터」라 함)에서는 「당 센터」의 세미나실을 대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(대여 대상단체)

제1조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문화·학술 교류를 담당하는 단체와 그 활동내용이 「당 센터」의 설립취지와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단체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(대여 대상이 되는 활동 및 대여 제한)

제2조 대여 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한일 양국(제3국을 포함)의 문화 소개 및 교류활동
- 나. 한일 양국(제3국을 포함)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술 교류활동
- 다. 일본어 학습에 관한 활동
- 라.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활동

2)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대여가 제한된다.

- 가. 상품 홍보·판매 등 영리를 위한 사업
- 나. 특정 주의·주장 또는 정책의 선전 활동
- 다. 「당 센터」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제 사업
- 라. 사용 기간이 너무 길거나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단체
- 마. 「당 센터」의 자체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
- 바. 참가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

(대여일 및 시간)

제3조 세미나실의 대여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하며, 휴일이라도 문화정보실
개관일에는 대여가 가능하다.

2) 세미나실의 대여시간은 원칙적으로 09:30에서 18:00까지로 한다.

(대여료)

제4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.

(대여 신청 요령)

제5조 대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「당 센터」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를 희망하는 날
로부터 1개월 전까지 「당 센터」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) 「당 센터」에서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대여일 2주일전까지 신청단체에 문서로
통지한다.

(사후 보고서 제출)

제6조 해당 단체는 사업 종료 후 2주일 내에 사업 보고서를 「당 센터」에 제출하여
야 한다.